

의안번호	2213830
의 퇴 인	김태호의원
회 답 일	2025.10.23.
추계번호	25D5600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총수의 상한을 현행 25명에서 35명으로 상향 규정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3,600만원씩 총 1억 8,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증원 (안 제6조)	36	36	36	36	36	180	36

주: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5년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의장·부의장)	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3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3	안 제6조(의장·부의장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추계기간 간부위원 활동지원비는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자문회의의 부의장은 개정안에 따른 최대 증원인원인 10명이 증원된다고 가정함
- 개정안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안 제6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총수의 상한을 현행 25명에서 35명으로 상향 규정할 경우 간부위원 활동지원금 지급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
 - 현재 자문회의의 부의장은 25명이며, 매월 1인당 300,000원이 간부위원 활동지원금으로 지급되고 있음
 - 개정안에 따라 부의장의 수가 35명으로 증원될 경우, 10명의 부의장에 대한 간부위원 활동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추계기간 총 1억 8,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증원 (안 제6조)	36	36	36	36	36	180	36

주: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25년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